#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

2013. 10. 10(목) 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 09. 17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3. 09. 17

라. 상정일자 : 2013. 10. 10(제211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)

O 제안설명 : 오병집 자치행정국장

O 검토보고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
O 질의 및 토론

O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「인천 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
- O 위 변경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○ 공유·사유재산 교환

### - 사유재산(취득재산)

(단위: m², 천원)

구 분	지 번	면적	시가	재산가격	비고
토지	계양구 용종동 207-1	3,656.2	2,680	9,798,616	

※ 시가 : 감정평가(2개 업체)산술 평균액[2013. 8월]

- 공유재산(처분재산)

(단위: m², 천원)

구 분	지 번	면적	시가	재산가격	비고
토지	계양구 용종동 207-2	3,656.2	2,680	9,798,616	

## ○ 기부채납 취득

- 기부채납 재산현황

(단위: m², 천원)

구 분	지 번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재산관리관
건물	계양구 용종동 207-1		14,862	20,230,000	대변인

※ 기준가격: 개발이익 환수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 기준

○ 공유재산(공촌동 305, 토지·건물) 매각

- 처분(매각) 재산현황

(단위: m², 천원)

구 분	지 번	지목	면적	처분면적	기준가격	비고
계			2,170.22	2,170.22	1,515,871	
토지	서구 공촌동 305	대	1,358.30	1,358.30	1,003,783	
건물	"	(1동)	811.92	811.92	512,088	

※ 기준가격: (토지) 2013. 1. 1. 공시지가, (건물) 감정평가금액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O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 및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  -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과 처분, 기부채납 취득, 공유재산(공촌동 305, 토지·건물) 매각에 따른 처분 등 취득 2건, 처분 3건임.
- O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의 교환안과 기부채납 취득안은
  - 1994년 계양여객터미널 개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한 후 2001년 ㈜금아산업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터미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와 입지의 부적합 등으로 계양여객 터미널 폐지 및 서북부 지역 터미널 계획 신설이 결정 된 후
    - (❖ 2013년 1월,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)
  - 2013년 7월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으로 터미널 부지 (사유재산)와 경관녹지(공유재산)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, ㈜금아산업과 인천광역시간 건설협약 체결로 해당 토지를 공동 개발 하고자 함에 따른 것임.
  - 해당 부지의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와 지역방송국 유치의 필요성 제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㈜금아산업이 방송통신 시설을 신축하여 인천광역시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시 재정에 기여토록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.

- 이는 지역방송국 유치를 전제로 용지변경 등 계산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고 공유 및 사유재산의 상호 교환과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방송국 유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,
- 현재 유치대상으로 거론되는 OBS의 경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자본잠식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있는 바,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또한, 지난 4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 및 OBS간 인천 이 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#### ○ 공유재산(공촌동 305, 토지 및 건물) 매각안은

- 2012년 11월 28일 제205회 정례회 기간중 「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」으로 국유재산(경찰청)과 시유재산(인천광역시)의 상 호 교환을 의결한데 이어
- 인천광역시에서는 2013년 8월 5일 해당 재산(토지 및 건물)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, 이중 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서구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해당 재산에 대한 인천광역시 자체 활용계획 등 수요에 대한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바, 서구청이 해당 재산을 매입할 경우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최용덕 위원>

- OBS는 유치인가,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인가?
- →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임.
-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?
- → 시 차원의 시정 홍보 활성화와 지역 문화발전에 공헌할 것을 기대
- 여객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?
- → (주)금아산업에서 부지매입하였지만 주변 도심화와 부천지역의 터미널 설치로 수입면에서 효율성 떨어지고 주민의 환경, 교통 난문제로 사업 표류. 시와 (주)금아산업이 서로 윈윈하는 차원 에서 결정.
- OBS 유치와 별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면, 이쪽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→ 도화지역은 문화적 고려로 시립미술관을 계획중이며, 이 지역의 강점은 시비 투자 없이 추진할 수 있고 유상임대료 수입이 기 대됨.
- 도화구역은 부지가 싸고, 활용 용도가 없으니 그런 측면에서 판단?
- → 종합적으로 판단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.
- 구간 부익부, 빈익부 조장. 균형발전의 노력 필요
- → 건축비가 많이 듬. 도화지역은 부지부터 사야하는 상황.
- 우선 빈 공간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함.
- → 개발자 상호간 적정한 시설을 전제로 추진되는 상황으로 이해 바람.

#### <홍성욱 위원>

- 계양구 용종동 부지는 해당부지가 흉물화 되어 이용방안 강구 차워에서 사업 진행된 것임.
- 방통위가 OBS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은?
- → 차질없이 10월중 본 협약을 체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송국 유치도 검토 가능함. 방송시 설이 있으면 임대 가능할 것으로 봄.
- OBS와 10월중 본 계약 체결하면 바로 공사시행?
- → 12월 착공을 먼저 할 예정임. 사업계획 승인후 분양계획 수립.

##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용범, 차준택, 이강호, 홍성욱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4명, 찬성 : 4명, 반대 : 0명)

## 7. 소수의견 요지

O 없음

## 8. 기타 사항

O 특이사항 없음

□ 붙 임: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(안) 1부.

##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(안)

■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4
■ 2013년도 재산의 목록(취득 대상)5
■ 2013년도 재산의 목록(처분 대상)6
■ 2013년도 재산의 목록(변경 취득)7
■ 관련 자료
□□ <u>공유·사유재산 교환</u> 8
□□ <u>기부채납 취득</u> ········ 18
□□ 공유재산(공촌동 305, 토지·건물) 매각 ··········· 26

## -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## □□ 취 득

(단위: m², 천원)

구	분	동수	필지수	면적	기준가격	비고
총	계	7	28	104,982.07	155,382,692	
	당 초		27	59,502	49,269,661	
토 지	금 회		1	3,656.2	9,798,616	
	누 계		28	63,158.2	59,068,277	
	당 초	6		26,961.87	76,084,415	
건 물	금 회	1		14,862	20,230,000	
	누 계	7		41,823.87	96,314,415	
	당 초	_	_	_	-	
기타	금 회	_		_	-	
	누 계	_	_	_	-	

💥 당초 : 2013년도 본 계획과 변경계획의 누계 숫자임

## □□ 처 분

(단위: m², 천원)

구	분	동수	필지수	면 적	기준가격	비고
총	계	2	55	231,138.13	323,863,470	
	당 초		53	225,196	312,527,346	
토 지	금 회		2	5,014.5	10,802,399	
	누 계		55	230,210.5	323,329,745	
	당 초	1		115.71	21,637	
건 물	금 회	1		811.92	512,088	
	누 계	2		927.63	533,725	
	당 초					
기 타	금 회	_	_	_	_	
	누 계	_	_	_	_	

💥 당초 : 2013년도 본 계획과 변경계획의 누계 숫자임

## □□ 변경 취득

(단위 : m², 천원)

구	-	분	동수	필지수	면 적	기준가격	비고
총	7	1)	1		6,196.96	19,537,000	
	당	초					
토 지	금	회					
	누	계					
	당	초	1		6,196.96	19,537,000	
건 물	금	회					
	누	계	1		6,196.96	19,537,000	
	당	초					
기 타	금	회	_	_	_	_	
	누	계	_	_	_	-	

## 2013년도 재산의 목록(취득 대상)

(단위 : m², 천원)

관리	재산	7	재 산 의	・ ・ ・ ・ ・ ・ ・ ・	]	취득	-) 고·) 과	a E a l o	재 산	w) =
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 적	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관리관	비고
계						104,982.07	155,382,692			
2013-1	토지	서구 경서동	939-11	대	1,500	제205회 역 제외(수	임시회에서 ·정가결)	청라119안전 센터(신축)	서 부 소방서장	'12. 11.28
"	건물	서구 경서동	"	(1동)	_		"	청라119안전 센터(신축)	서 부 소방서장	"
2013-2	토지	서구 공촌동	305	대	1,358.3	1,358.3	1,003,783	국(경찰청)유· 공유재산 교환	재산관리 과 장	"
"	건물	"	"	(1동)	-	855.88	499,331	"	"	"
"	토지	부평구 산곡동	369- 480	대	876	876	1,165,080	"	"	"
"	건물	"	"	(1동)	-	144	43,200	"	"	"
"	토지	남구 주안동	1530- 18	대	149.8	149.8	135,269	"	"	"

관리	재산	7	재 산 의	五人	]	취 득	コスココ	되도기 o	재 산	טן ש
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 적	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관리관	비고
2013-2	건물	"	"	(1동)	_	159.99	44,000	"	"	'12. 11.28
2013-3	토지	남구 도화동	76-1외 12필지	_	76,587.5	5,247	15,214,799	JST 신축	경제수도 정 책 관	"
"	건물	남구 도화동	76-1외	(1동)	_	14,465	42,841,654	"	"	"
2013-4	토지	남구 도화동	206-2외 9필지		72,214.5	3,753	10,882,627	행정타운 (상수도본부청사) 신축	상수도 사 업 본부장	"
"	건물	"	206-2 외	(1동)	-	10,347	30,600,000	"	"	"
2013-5	토지	서구 원창동	392-3		46,617.9	46,617.9	19,020,103	제2외곽순환 도로 부지	도시계획 과 장	'13. 5. 1
2013-6	토지	서구 경서동	939-11	_	1,500	1,500	1,848,000	청라119 안전 센터(신축)	서 부 소방서장	'13. 6.26
"	건물	"	939-11	(1동)	_	990	2,056,230	"	"	"
2013-7	토지	계양구 용종동	207-1		3,656.2	3,656.2	9,798,616	사유재산 교환	대변인	
"	건물	"	207-1	(1동)	_	14,862	20,230,000	기부채납	대변인	

※ 관리번호 :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

## ■ 2013년도 재산의 <del>목록</del>(처분 대상)

(단위: m², 천원)

관리	재산	ス	내 산 의	표 시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 사유	재 산	비고
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 적	면 적	기반기적	기표 기비	관리관	
계						231,138.13	323,863,470			
2013-1	토지	부평구 청천동	192-5	대	2154.5	2154.5	1,870,106	국(경찰청)유· 공유재산 교환	재산관리 과 장	'12. 11.28
"	토지	중 구 북성동2가	13-1	대	199.7	199.7	403,394	"	"	"
"	토지	남 구 용현동	623-10	대	177.2	177.2	228,588	"	"	"
"	토지	남동구 간석동	119-7	대	145.5	145.5	298,275	"	"	"

관리	재산		재 산 의	引 丑 ノ	4	처 분	기준가격	처분 사유	재 산	비고
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 적	면 적	기군기석	시	관리관	비끄
2013-1	건물	남동구 간석동	353-10	(1동)	_	115.71	21,637	"	"	'12. 11.28
2013-2	토지	연수구 송도동	30-1외 43필지	대		74,073.2	234,133,863	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	평가조정 담당관	'13. 3.22
2013-3	토지	서구 원창동	388-4외 8필지	잡	75,952.3	75,952.3	32,788,997	시 건전재정 활성화	도시계획 과 장	'13. 5.1
2013-4	토지	서구 원창동	381-7 외 17필지	잡	56,366.6	56,366.6	22,997,736	시 건전재정 활성화	회계과장	'13. 6.26
2013-5	토지	남동구 논현동	764-4	대	10,776.8	10,776.8	18,105,024	재정 확충	회계과장	'13. 9.12
2013-6	토지	서구 원창동	395-9	잡	1,917.0	1,971.0	626,778	재정 확충	도 시 계획과장	"
"	토지	서구 원창동	395-10	잡	3,379.2	3,379.2	1,074,585	"	"	"
2013-7	토지	서구 공촌동	305	대	1,358.30	1,358.30	1,003,783	공공용 재산활용계획에 의거 매각	회계과장	
"	건물	서구 공촌동	305	(1동)		811.92	512,088	"	"	
2013-8	토지	계양구 용종동	207-2	대	3,656.2	3,656.2	9,798,616	사유재산 교환	대변인	

※ 관리번호 :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

## 2013년도 재산의 목록(변경 취득)

(단위 : m², 천원)

	재산	재 산 의 표 시				변경(취득)	기준가격	변경(취득)	재 산	비고
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 적	면 적	기판기역	사유	관리관	비포
2013-1	건물	연수구 선학동	217-5 외		_	6,196.96	19,537,000	면적 축소	체 육 진흥과장	'13. 9.12
				০	헝-	빈	칸			

## □□ 공유·사유 재산 교환

-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(결정) 및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주민제안 관련 건설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유재산 (토지)과 사유재산(토지)을 일단의 획지로 공동개발 예정
- 공동개발 당사자간 소유 토지에 대해 교환 (토지 소유방식 변경: 지번→지분)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 운용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

## I. 관련근거

	「공유재산	민	물품관리법	제39주(	(교화)
1 1	0 11 711 1 1	ス	20190	~	

- □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44조(교환)
- □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45조(교환차금의 납부)

## Ⅱ. 그 동안 추진사항

	2013.	3월	:	주민제안(시설폐지,	지구단위계획)	접수
--	-------	----	---	------------	---------	----

- □ 2013. 5월: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원안가결)
- □ 2013. 7월: 건설협약서 체결[(주)금아산업⇔인천광역시]
- □ 2013. 7월: 인천도시관리계획(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)

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□ 2013. 8월 : 공유·사유 교환 대상지 실사
- □ 2013. 8월 : 교환대상토지 감정평가 실시

## Ⅲ. 교환대상 재산

## [공유재산]

(단위 : 원)

구 분	소 재 지	면적(m²)	시가/ m²	재산가격	비고
토지	계양구 용종동 207-2	3,656.2	2,680,000	9,798,616,00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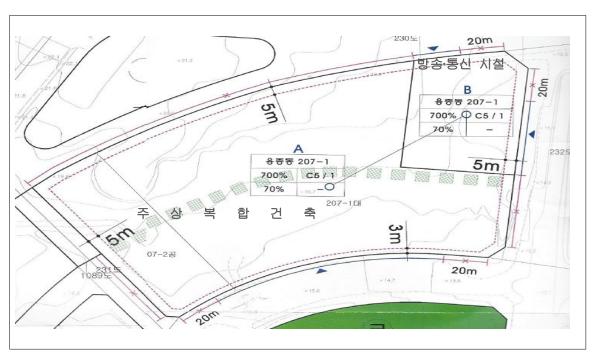
## [사유재산]

(단위 : 원)

구 분	소 재 지	면적(m²)	시가/ m²	재산가격	비고
토지	계양구 용종동 207-1	3,656.2	2,680,000	9,798,616,000	

- ※ 시가 : 감정평가(2개 업체)산술 평균액[2013. 8월]
- ※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 주요 내용
  - 。 용지 변경 : 경관녹지, 여객자동차터미널 → 상업용지
  - 공동개발(권장) 지정 : 방송 · 통신시설과 주상복합 건설 사업의 동시 추진

<발췌 도면>



## Ⅳ. 교환대상 재산실태

#### □ 공유재산 실태

O 재산 이용 상황

구분	지 번	면 적	현 이용 상황	비고
토지	계양구 용종동 207-2	3,656.2 m²	舊 경관녹지	

○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의거 자동차정류장의 폐지에 따라 소음·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경관녹지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경관녹지가 폐지되고 상업용지로 변경됨

## □ 사유재산 실태

O 재산 이용 상황

구분	지 번	면적	현 이용 상황	비고
토지	계양구 용종동 207-1	3,656.2 m²	舊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	

○ 자동차정류장 부지였으나 인접한 부천터미널과 수요 중복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자동차 정류장 입지 부적정(인천발전연구원, 계양터미널 입지에 관한 연구결과), 교통정비중기계획(2007~2016)에서 시설폐지를 사유로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의거 공공시설 용지 폐지되고 상업용지로 변경됨.

## Ⅴ. 교환 방법

-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27조 제1항 규정
  - "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."에 따라
  -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결과 교환차액 발생 않으므로 별도 정산 없음.

## □ 교환차액

(단위:원)

구 분	공유재산	사유재산	교환차액
교환면적	3,656.2m²	3,656.2m²	
재산가액	9,798,616,000	9,798,616,000	0

## Ⅵ. 법령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등) 검토

#### 검 토 의 견 검 토 사 항 ■ 관련법규상 교환 근거 【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】 제39조(교화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ㅇ 교환 공유지는 주상복합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 사업에 사유재산으 는 일반재산인 토지, 건물, 그 밖의 토지 로 사용 가능 의 정착물을 국유재산.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ㅇ 교환 사유지는 향후 공 있다. 유재산으로 취득할 건축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 물 부지로서 동일 면적 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 으로 지분형태 취득 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⇒ 교환 가능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【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】 제44조(교환)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 토지와 토지 간 교환으로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서로 유사한 경우에 해당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 ⇒ 교환 가능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.

### ■ 관련법규상 교환 기준

### 【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】

제27조(일반재산의 가격평정 등)① 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감정 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.

**제44조(교환)**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 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 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을 산술평균한 결과 교환차액 발생액 0원.

⇒ 차액 없이 교환

### ■ 재산의 사용실태

- 공유재산
- 사유재산

- 0 舊 경관녹지로서 상업용지로 변경됨
- ㅇ 舊 여객터미널로 대지 상태, 상업용지로 변경됨

### ■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여부

## 【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】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
  -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이상 취득 인 경우, 10억 이상 재산의 처분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- 0 교환 취득면적이 3.656.2m², 재산가격이 9,798,616천원이며, 교환 처분 면적은 3,656.2m², 재산가격이 9.798.616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

## Ⅶ. 종합검토 의견

- 교환대상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은 2013년 7월 29일 계산구역 지구 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에 의하여 용도폐지 된 경관녹지(공유재 산)와 자동차정류장(사유재산)으로 향후 일단의 획지로 방송·통 신 시설과 주상복합 건설 사업 시행 예정.
- O 개발 사업 완료 후 방송·통신 시설을 기부 채납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며 그 부지에 대하여 현행 공유재산(토지) 면적과 동일하게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27조제3항에 따라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정한 결과 교환 대상 토지 예정가격 간에 차액 발생하지 않으므로 교환 절차를 추진하고 함.

## Ⅷ. 향후 추진 계획

- O '13. 9월: 시의회 안건 상정(제211회 임시회)
- O '16. 12월~: 사업완료 후, 토지소유권 이전

[(주)금아산업 ⇔ 인천광역시)]

### 붙임: 참고자료

- 1. 취득대상 재산목록
- 2. 처분대상 재산목록
- 3. 위치도 및 현장사진
- 4. 관련법령

##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관리	재산	;	재 산 으	日 丑 ノ	.]	취득	기준가격 (시가)	취득사유	재 산	บโ 🗝
관리 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면 적		ብ <b>ጥ</b> ጥ	재 산 관리관	비고
1	토지	계양구 용종동	207-1	대	3,656.2	3,656.2	9,798,616	사유재산 교환	대변인실	
			०]		ठे	빈	칸			

## [붙임 2]

## 처분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관리	재산	;	재 산 의	丑人	j	처 분	기준가격 (시가)	처분사유	재 산	טן די
관리 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면 적	(시가)	시간사고	재 산 관리관	비고
1	토지	계양구 용종동	207-2	대	3,656.2	3,656.2	9,798,616	공유재산 교환	대변인실	
			ୀ		ंठे	빈	칸			

## [붙임 3]

## <u>교환 공유·사유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</u>



## 관 련 법 령

## 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]

- 제28조(관리 및 처분) ① <u>일반재산</u>은 대부·매각·<u>교환</u>·양여·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.
  - ② 생략
- **제30조(처분재산의 가격 결정)** <u>일반재산을 처분</u>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(時價)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제39조(교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,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<u>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</u>. 다만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 〈개정 2010.2.4〉
  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 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
  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
  - 3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 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 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
  - 4.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·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.

## 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]

- 제27조(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)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<u>교</u> 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<u>시가로 결정</u>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</u> 하며, <u>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</u>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,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(連接)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  - ④ 생략
 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
  - 2.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
  - 3.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
  - ⑥~⑧ 생략
- **제44조(교환)** ① 법 제39조에 따라 <u>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</u> 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.
  -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## □□ 기부채납 취득

- 계산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우리 시와 (주)금아산업 간 체결한 건설협약서에 따라 (주)금아산업이 방송통신 시설을 신축하여
- 우리 市에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재정에 기여토록 건축물 기 부신청서가 제출되어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취득하고자 함.

## I. 관련 근거

- O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7조
- O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5조
- O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제15조
- O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」제12조

## Ⅱ. 기부채납재산 현황

### □ 기부채납 배경

- O 1994년 동 부지에 여객터미널 최초 결정
  - 2001년 금아산업(주)에 매각하여 터미널 사업 추진
  - 2007년 금아산업(주)에서 터미널 사업 면허 신청
  -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반려되어 터미널 사업 표류
- O 2007년 인천발전 연구원 연구 결과 터미널 입지 부적합 분석
  - 인접 부천시 상동 터미널 입지로 여객 수요 중복, 교통 혼잡
- O 2013년 1월「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」변경
  - 계양여객 터미널 폐지, 서북부 지역에 터미널 계획 신설
- O 2013년 3월 (주)금아산업으로부터 주민제안 개발사업 접수
  -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여객 터미널을 폐지, 토지면적의 40%에 해당하는 202억 상당의 공공시설(방송·통신)을 인천시에 기부채납
- O 2013년 5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거쳐 사업 추진

#### ≪사업개요 및 기대 효과≫

1) (주)금아산업 개발 사업 개요

지 번	면 적	주.	요 내용		
2필지	22,381 m²	도시계획 시설 변경	개발계획		
	18,724.8 m²	여객자동차 터미널 폐지	- 주거복합건축물 (18,724.8㎡)		
207-2 [인천광역시]	3,656.2 m²	경관녹지 폐지	- 방송·통신시설 (3,656.2m²)		

- 2) 장기간 방치되어온 부지의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환수와 방송국을 유치하여 방송문화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3) 당초 202억 상당의 건축연면적 9,500㎡에서 방송국 이전에 필요한 건축 연면적 14,862㎡를 기부 채납하는 건설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실제 기부채납 금액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

### □ 기부채납 재산

O 위치 :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7-1

O 건축 연면적 : 14,862m²(지하2층, 지상8층)

O 용도지역: 상업용지

O 재산가액: 202억원(개발이익 환수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 기준)

□ 기부자 : (주)금아산업 대표 김도욱

### □ 기부목적

- 인천시와 기부자간 체결한「계산구역 지구 단위계획결정(변경) 주민제안 관련 건설협약서」에 의거
- O 인천시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시 재정에 기여토록 기부

## Ⅲ. 그동안 추진사항

- O '13. 7. 25: 건설협약서 체결(市·(주)금아산업)
  - 용종동 207-1에 202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 준공하여 시에 기부채납
  - 공공시설은 방송·통신시설로 공개홀 1개소, 스튜디오 3개소, 업무시설 등 건축 연면적 14,862㎡을 기준으로 설치
  - 금아산업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(이행담보용, 완료)
- O '13. 7. 29 : 계산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(변경) 고시
  - 시소유 경관녹지 폐지, 금아산업 소유 자동차정류장 폐지
  - 공공시설 용지 폐지, 상용용지 신설
  - ※ 시소유 부지(3,656.2㎡)를 개발사업에 포함시키고 금아산업 소유지 내 방송·통신 시설부지(3,656.2㎡)를 인천시 소유로 확보,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 추진

## Ⅳ. 향후 활용방안

- O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
- O 방송국 유치 후, 유상임대를 통해 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

## V. 향후 추진 계획

O '13. 9월 : 시의회 안건 상정(제211회 임시회)

O '13.10월 : 기부채납 약정서 체결[인천광역시⇔(주)금아산업]

O '16.12월 : 건축물 준공 후, 기부채납

## Ⅵ. 참고자료

- 1. 취득재산목록
- 2. 지역방송국 배치도 및 투시도
- 3. 관계 법령

##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관리	재산		재 산 의	丑人		취 득	-1 Z -1 -1		재 산	
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관리관	비고
1	건물	계양구 용종동	207-1			14,862	20,230,000	기부채납	대변인실	
					이하 빈칸					

## [붙임2]

## 지역방송국 배치도 및 투시도





## 관계법령

## 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]

제7조(기부채납)① 지방자치단체는 <u>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</u>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(無償)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.

### 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]

- 제5조(기부채납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<u>기부(寄</u>附)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.
  - 1. 기부할 물건의 표시
  - 2. 기부자의 명칭, 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  - 3. 기부의 목적
  - 4. 기부할 물건의 가격
  - 5. 기부할 물건의 도면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·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
### [공유재산 관리조례]

#### 제15조(기부채납의 원칙)

-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[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]

#### 제12조 (기부채납)

-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물건에 표시
  - 2. 기부자의 주소·성명
  - 3. 기부의 목적
  - 4. 재산의 현황
  - 7.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
  - 8. 사용계획서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## □□ 공유재산(공촌동 305, 토지·건물) 매각

- 국유재산(경찰청)과 시유재산(인천광역시)간 상호 교환한 토지 및 건물(공촌동 305번지)에 대하여
-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서구청에 수의 계약 매각 추진코자 함.

## I. 관련근거

- O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
- O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
- O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」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O 「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7조

## Ⅱ. 매각개요

O 매각 대상 재산

(단위: m², 천원)

재산 구분	지 번	지목	면적	처분면적	기준가격	비고
계			2,170.22	2,170.22	1,515,871	
토지	서구 공촌동 305	대	1,358.30	1,358.30	1,003,783	
건물	"	1동	811.92	811.92	512,088	

**※**기준가격: (토지) 2013. 1. 1 공시지가, (건물) 감정평가금액

## O 매각 방법

- 수의계약 추진

※ 관련근거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제1항 제1호

## Ⅲ. 그동안 추진사항

- O '12.10. 9. : 국(경찰청) · 공유재산 교환계획 수립
- O '13. 7. 10.: 교환계약체결(인천광역시⇔인천지방경찰청)
- O '13. 8. 5. : 소유권 이전[국(경찰청)→인천광역시]
- O '13. 8.27. : 일상감사 결과(감사관실)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36조(일반재산의 매각)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에 의거 매각 가능
  - 매각대금(예정가격) 및 방법 등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하기 바람

## Ⅳ. 향후 추진계획

- O '13. 9월 : 시 의회 안건 상정(제211회 임시회)
- O '13. 10월~: 감정평가 및 수의계약 매각 추진

## V. 참고자료

- O 위치도 및 현황 사진
- O 처분대상 재산목록
- O 관련법령

## 위치도 및 현장사진

## ● 공촌동 305번지 위치도



## ● 현장 사진



## 처분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	21.11	재 산 의 표 시				-1 11		(단위· M, 선원		
관리 번호		소재지	세 건 = 지번	1 표 / 지목	기적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1	토지	공촌동	305	대	1,358.30	1,358.30	1,003,783	공공목적 활용계획에 의거 매각	회계과장	
2	건물	공촌동	305		1동	811.92	512,088	"	"	
			٥٦		하	빈	칸			

## 관계 법령

## 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]

- 제29조(계약의 방법)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, 증권의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,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.
 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처분재산의 가격 결정)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(時價)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**제36조(일반재산의 매각)**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.
  - 1.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
  - 2.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- 3.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규모·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**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** 체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  -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.

## 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]

- 제26조(계약의 방법)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·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  -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.
 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 정방법은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  - 제27조(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)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 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 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.
    -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. 다만,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-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있으며,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(連接)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    -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(특별시,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)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에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)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, 건물의 가격은
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
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
  - 2.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
- 3.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
- ⑥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.
-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·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)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 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  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 - 2.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 받 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  - 3.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  - 4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  - 5.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·연립주택·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
-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- 6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- 7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- 8.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 는 경우
- 9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
- 10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- 11.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
- 12.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- 13.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- 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  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
  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
  - 다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
  - 라. 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

- 마.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- 바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- 사.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
- 15.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- 1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 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·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- 17.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
- 18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
- 19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
- 20.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
- 21.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
- 22. 제21호에 따른 도서·벽지 외의 읍·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
- 23.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- 2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시 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,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- 25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- 2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
- 27.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- 28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
- 29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안전행정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
-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.